

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 9 조 (계약기간)

- (1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(2)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항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0 조 (계약목적)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,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위생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- (1)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.
- (2)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(방문요양, 방문목욕)와 금액을 확인하고,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(3)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,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,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,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.

제 11 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

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급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반 대상자는 기본요금(요금표)의 15%,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6~9%, 기초수급자는 면제한다. 다만,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(한도초과) 이용은 전액자기 부담으로한다. 그 밖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야간(오후 6시~10시)의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20%의 가산이 되며, 심야(오후 10시에~오전 6시)의 가산 및 일요일, 공휴일에 대한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30%의 가산이 되어 청구한다.(세부적인 내용은 제 4장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참고)

제 12 조 (신원 인수인의 권리·의무)

1. 신원인수인(보호자)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1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2)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3)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4) 대상자의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5)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, 불편사항,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6)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2. 신원인수인(보호자)과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(갑-대상자, 을-센터, 병-보호자)

1) '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,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
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‘을’과 협의한 규칙 이행

2) '을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방문요양,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- ② 급여제공 중 '갑'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'병'에게 통보
- ③ 급여제공시간에 '갑'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④ 급여제공 중 알게된 '갑'의 신상 및 질환등에 관한 비밀유지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- ⑤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- ⑥ '갑'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
- ⑦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-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- ⑨ 기타 '갑'(또는 '병')의 요청에 협조

3) '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'갑'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-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에게 통보
- ④ '갑'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- ⑤ 기타 '을'의 협조요청 이행

3. 이 외에 다음의 내용을 내용을 숙지하고,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.

-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-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.
-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④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,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
제 13 조 (계약의 해지)

1. '갑'(또는 '병')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1)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) 급여계약서의 제3조의 방문요양,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) 급여계약서의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'갑'(또는 '병')의 동의 없이 '을'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- 4) 기타 '갑'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'을'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을'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1)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2) 급여계약서의 '갑'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3) 급여계약서의 '갑'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

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4) '갑'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5)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'갑'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
6) '갑'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3.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.

1) "갑"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2) "을"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를 "갑"에게 통지한 때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3) '을'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'갑'과 '병'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